

검 토 보 고 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10

(2010.01.27)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월 12일(화)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월 14일(목)

4. 개정근거

가. 「폐기물관리법」(2007.12.21 법률 제8789호) 제4조, 제14조 등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6호)

제3조, 제7조 등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9.8.7 환경부령 제346호)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고,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법규명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 휴대폰과 소형가전제품 등에 있는 금·은·구리 등 회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도시 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형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 등의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띠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는 법령 입법 체계에 맞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로, 안 제3조제3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이하 조문에 “마포구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붙여 쓰며, 안 제7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로, 안 제35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37조제2항 중 “제36조 제2항에 따른”은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붙여 쓰며, 안 제41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1조제3항에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중 무단투기 단속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단속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속업무 실태와 문제점, 타 부서 업무와의 형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2조(용어의 정의) 1. ~ 5. (생략)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 8. (생략)</p> <p>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생략) 1. ~ 3. (생략)</p> <p>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2조(용어의 정의) 1 ~ 5. (원안과 같음) 6. _____ _____ _____ _____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_____ _____.</p> <p>7. ~ 8. (원안과 같음)</p> <p>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_____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④ (원안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p> <p>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_____ _____ _____ _____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_____.</p>

원 안	수 정 안
<p>제37조(청문)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36조</u>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 한다.</p>	<p>제37조(청문) ① (원안과 같음)</p> <p>② -----</p> <p>----- <u>제36조</u></p> <p>제2항에 따른 -----</p> <p>-----</p> <p>-----</p> <p>-----</p> <p>-----.</p>
<p>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p> <p>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투기 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p> <p>① -----</p> <p>-----</p> <p>-----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 -----</p> <p>-----</p> <p>-----</p> <p>-----.</p> <p>② ~ ③ (생략)</p>

관 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12.22] [법률 제8789호, 2007.12.21, 타법개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다.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7] [환경부령 제346호, 2009. 8. 7, 일부개정]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